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방안

이능문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 각 나라마다 제품의 안전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해당국가에 대한 산업기술력의 척도로서 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통하여 운영되었으나 최근 전 시험 또는 인증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 기술기준까지 공동으로 개발·인정하는 표준 동등성 등 인증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이상 국내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국내 방송통신산업 발전 및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I.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운영현황

우리나라도 전파환경 및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 전용의 기기, 시험연구용 기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통신기기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❶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파연구소가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증신청부터 인증서 교

부까지 일련의 업무를 전자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다.

인증 받은 제품은 인증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지난 8월 새로운 인증표시를 제정하여 '08. 11. 1일부터 적용한다. ❷

한편, 각 국도 전파환경 및 정보통신망,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제조업체가 스스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유통이 가능한 적합선언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더불어 자국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인증기준 및 사후관리 등은 강화하고 있는데 EU의 경우 부적합제품 경보시스템(RAPEX :

1 정보통신기기 인증의 구분

구분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인증목적	통신망 위해 방지	인명 구조	혼신·간섭방지	기기 오작동 방지
대상기기 (품목수)	유선기기(69개) 전화기, 모뎀 팩스 등	무선기기(37개) 경보자동수신기 레이더 등	무선기기(62개) 휴대폰, RFID/USN 등	정보기기(118개) PC, 프린터, 모니터 등
근거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파법 제46조	전파법 제46조	전파법 제57조

2 인증표시 개편내용

〈개편전〉



➔

〈개편후('08. 11. 1일 부터 적용)〉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08. 11. 1일 이전 인증받은 제품은 종전의 인증표시부착이 가능하며 제품의 특성으로 색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 흑색 또는 백색 사용 가능

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consumer products)을 구축·운영하여 사후관리 결과 불량제품 발견시 전 회원국에 공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인증대상의 모든 방송통신기에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통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상대국에 SDoC 도입을 요구하는 등 FTA 등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II. 국내 인증제도의 개편방향

시장진입에 따른 기회비용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부각되고 통신·방송의 융

합 등 기술발전 및 소비자욕구가 제품의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간 무역이 활성화되고 상호인정협정(MRA), FTA 등이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인증제도의 글로벌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한 국내 제도의 주요 개편 방향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규제 완화
- ②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강구
- ③ 시험, 인증 등 적합성 평가체계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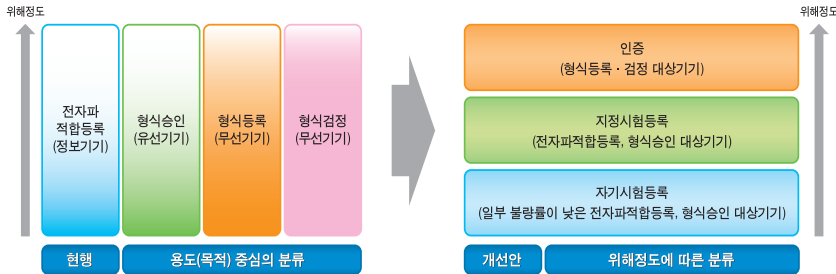
ISO 9000 등 품질경영시스템의 도입으로 제품생산에 따른 품질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사전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되, 중국, 대만 등 외국산 저가 수입제품이 범람하는 것에 대비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을 강

3 미인증 기기 및 표본조사 현황

(단위 : 건, %)

구분	'03	'04	'05	'06	'07. 9.
미인증 기기(증가율)	170(1.8)	242(42.4)	327(35.1)	514(57.2)	424
표본조사(실시율)	605(7.4)	638(7.9)	690(7.8)	724(7.2)	65

4 인증유형의 재분류



5 단계별 인증방식 개선방안

현행	1단계(2009년 하반기)	2단계(2010년 하반기)	3단계(2011년 1월)
형식승인	인증	지정시험등록	위해 · 불량률 낮은 기기 자기시험등록
형식등록	인증	인증	인증
형식검정	인증	인증	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지정시험등록	지정시험등록	위해 · 불량률 낮은 기기 자기시험등록

화해야 한다. 지나친 사전규제 완화가 규제의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찾는 것이 인증제도 개편의 주요 정책 방향이라 할 것이다.

3

III. 인증제도 개편 추진내용

1. 인증유형 재분류

기기의 위해 정도 · 안정도 불량률에 따라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위해 정도가 낮고 성능이 우수한 기기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과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등록하는 지정시험등록, 자체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으로 개편하되 대상기기 적용기준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형식등록 · 검정대상 기기는 인증제 유
- ②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대상 기기는 지정시험등록제 도입
- ③ 불량률이 낮은 기기는 자기시험등록 허용

국제적으로 기술기준 등이 통합되어 있는 전자파분야에 대해서는 지정시험등록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제도 정착 추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신제품 가인증제 도입

현행 인증체계는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인증이 불가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기술개발 발전에 맞추어 기술기준이 적시에 제정되지 못할 경우 신제품 개발 · 출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통기술기준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신제품 가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가인증에 따른 타 무선통신과의 혼신, 서비스 호환성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주파수가 분배 · 할당되지 않은 무선기기나 서비스 호환성이 보증되지 않은 유선기기 등에 대한 처리방안
- ② 인증유효기간 설정여부와 가인증 후 본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유통된 기기 처리방안

3.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송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이와 더불어 배터리 폭발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에 치명적 일 수 있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기 이용의 안전 확보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기준을 모든 방송통신기기에,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소비자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기기로의 단계적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⁶

아울러, 정보기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적합성기준을 무선기기로 확대하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무선랜, 블루투스 등 소출력 무선기기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⁷

또한, 업체가 부적합을 사전 인지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부적합정보 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부적합 기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규제완화에 따른 시험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제기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기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기관은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품질관리의 적절한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더불어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인증 및 시험업무의 국내외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6 정보통신기기 인증기준 강화방안

- 전기안전기준 : 유선기기에만 적용 ⇒ 정보·무선기기 추가
- 전자파흡수율기준 : 휴대폰에만 적용 ⇒ 휴대용 무선기기로 점진 확대

7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기준 도입방안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 기기	무선랜, 블루투스	소출력 무선기기, 수신기	모든 무선기기

더불어 거대 외국 시험·인증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지정시험기관 시험설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자발적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미국, EU 등 FTA와 연계하여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 MRA 체결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업체에 대한 사전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강화, 시장감시 활동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가 지난 9월 11일 개최되었으며 현재 공청회 개최결과 보완 및 시행령,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체, 소비자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인증제도가 더 이상 기업규제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소중한 전파자원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KTOA